

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운영계획안

1. 구성목적

-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피해재발을 방지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안(대책)을 제시하고자 함.

2. 구성근거

- 지방자치법 제50조 (위원회의 설치)
- 지방자치법 제54조 (위원회에 관한 조례)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(특별위원회의 설치)
-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(특별위원회)

3. 구 성

- 6인의 위원으로 구성

4. 조사대상

- 동두천시 전역에 걸친 수해상황

5. 활동기간

- 1999. 8. 17 ~ 8. 31 (15일간)

6. 세부활동계획

- 특별위원회(제1차)에서 수립·시행